의안번호	2126538
의 뢰 인	유동수의원
회 답 일	2024.3.5.
추계번호	24E017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5년 1조 1,291억원 등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 총 5조 739억원(연평균 1조 4,15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4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누적
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(안 제59조)	-	-11,291	-12,173	-13,124	-14,150	-50,739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 (근로소득세액공제)	○ 산출세액 기준 상향 - (현행 → 개정안) 산출세액 130만원 → 산출세액 180만원 ○ 공제한도 확대 - (현행 → 개정안) 총급여 3300만원 이하 (74만원 → 90만원), 총급여 3300~7000만원(66만원 → 75만원), 총급여 7000만원 ~ 1.2억원 (50만원 → 55만원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9조(근로소득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부칙에 따라,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어 2025.1.1.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

○ 동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, 동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경우부터 적용

○ 근로소득세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수가 다음연도 연말 정산시에 전액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

❑ 국세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

○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21~2022년 총급여 구간별 납세인원 증가율과 같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추계방법

❑ 국세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신고자료를 활용해, 결정세액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총급여규모별로 1인당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액을 추계한 후 각 구간별 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

○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2023년부터 시행된 근로소득세액공제 개정사항 및 과세표준 구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도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세수효과 추정

- 2022년말 세법개정으로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(1,200→1,400만원, 4,600만원→5,000만원)하면서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 1.2억원 초과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함

○ 총급여 구간별 납세인원은 2021~2022년 각 구간별 인원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2]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세수효과, 2022년 귀속 기준[1)]

(단위: 백만원)

	1인당 총급여	1인당 산출세액[2)]	1인당 근로소득세 액공제 (개정전)	1인당 근로소득세 액공제 (개정후)	△1인당 근로소득세 액공제	총 세수효과
합계	55.628	3.8	0.66	0.75	−0.09	−971,463
1천만 이하	4.615	0.3	−	−	−	
1.5천만 이하	14.295	0.3	0.17	0.17	0.00	0
2천만 이하	17.647	0.4	0.24	0.24	0.00	0
3천만 이하	25.099	0.7	0.37	0.37	0.00	0
4천만 이하	34.876	1.3	0.72	0.88	−0.16	−365,999
4.5천만 이하	42.447	2.0	0.66	0.82	−0.16	−157,318
5천만 이하	47.460	2.5	0.66	0.78	−0.12	−106,861
6천만 이하	54.850	3.3	0.66	0.75	−0.09	−125,790
8천만 이하	69.212	4.9	0.66	0.75	−0.09	−162,576
1억 이하	88.928	8.2	0.50	0.55	−0.05	−52,919
2억 이하	129.557	18.1	0.20	0.20	0.00	0
3억 이하	236.749	55.1	0.20	0.20	0.00	0
5억 이하	372.962	104.9	0.20	0.20	0.00	0
10억 이하	664.572	219.1	0.20	0.20	0.00	0
10억 초과	2051.499	818.0	0.20	0.20	0.00	0

주: 1) 결정세액이 있는자 기준
자료;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, 소득세수는 귀속기준으로 향후 5년간 총 6조 5,995억원(연평균 1조 5,25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제도 시행 이후 연말정산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됨에 따라, 2024년 귀속소득부터 개정세법이 적용

[표 3]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의 세수효과, 귀속기준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누적
소득세	−11,291	−12,173	−13,124	−14,150	−15,256	−65,995

❑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, 소득세수는 징수기준으로는 향후 5년간 총 5조 739억원(연평균 1조 4,15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반영

[표 4]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의 세수효과, 징수기준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누적
소득세	−	−11,291	−12,173	−13,124	−14,150	−50,739

나.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5년 1조 1,291억원 등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 총 5조 739억원(연평균 1조 4,15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4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누적
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(안 제59조)	-	-11,291	-12,173	-13,124	-14,150	-50,739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강민지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민지	02-6788-4746	min1231@assembly.go.kr